

# 地域單位 共同防衛 體制研究

申 大 鎮

(國防部動員豫備局長)

## A Study of the Regional Common Defense System

Dae Jin Shin

Director of Mobilization Offic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problem dealt with in this thesis is to develop a most viable "Regional Common Defense (RCD)" system in light of the ever-increasing military threat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historical review of the various types of defense systems, an examination of the Korean security situation and an in-depth analysis of the current RCD system, the paper presents the following three guidelines for the improvement: All defense-related elements must be integrated under the single law to be entitled "Homeland Defense Law," to provided tae legal assurance Various organizational systems responsible for the RCD must be integrated into a single system utilizing the current Defense Consultation Committee; Training and evaluation system must be improved such that the whole responsibility be given to a single man, that is, the Head of the Selfgoverning bodies. The thesis emphasizes as conclusion the urgent necessity of establishing a completely integrated RCD system in order to effectively meet the challenges ahead.

### I. 序 論

地域單位 共同防衛는 部落 또는 鄉土單位로 全體의 構成員이 한마음으로 뭉쳐 可用한 모든 手段을 統合하여 自己鄉土를 지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5千年 歷史속에서도 先祖들이 自然스러움에 發展시켜온 우리固有의 概念으로 오늘의 總力戰과 根本的으로 그 脈을 같이하고 있다.

이제 北傀는 70餘萬에 달하는 莫強한 軍事力を 建設하여 놓고, 好機捕捉時 奇襲攻擊으로 前後方을 同時 戰場化하여 5~7日以內에 戰爭을 終決지으려는 南侵計劃을 完了하고 그 時機만을 기다리는 狀況下에서 地域單位共同防衛의 遂行이 야말로

마치 스위스의 民兵制度가 그나라의 永世中立을 保障하고 있는것처럼 北傀의 前後方 同時戰場化企圖를 不可能 하게하여 戰爭挑發意志를 封鎖할 수 있는 主要 抑制戰力이 되는 것이다.

일찌기 68年度에 豫備戰力의 必要性에 立脚하여 創設된 鄉土豫備軍은 지난 蔚珍, 三陟武裝共匪浸透 및 1.21事態等, 數없이 態行된 北傀의 浸透共匪掃薄作戰에 赫赫한 戰功을 이루어, 名實相符한 鄉土防衛의 主役軍으로 成長하여 온것이 事實이나, 地域單位 共同防衛를 爲한 民, 官, 軍, 警, 豫備軍, 民防衛隊等 諸防衛要素를 統合運用하기에는 制度의으로 未洽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地域單位共同防衛의 本來 意味와는 달리 官의 主導하에 遂行되어 왔다.

그리므로, 地域單位 共同防衛는 地域構成員의 自發的인 參與를 前提로 하는 것인만큼 87年度부터 地方自治制度의 實施가 豫想되는 이때, 우리의 現實과 時代의 흐름에 副應하여 우리에게 適合한 地域單位 共同防衛體制의 發展方向을 提示하여 봄은 意味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II. 民兵을 中心으로 본 우리나라 防衛制度의 變遷

### 1. 概要

國家防衛의 概念은 어느나라든지 그當時 나라가 處해 있는 時代의 狀況과 戰爭의 樣相에 따라 變遷되어 왔다.

일찍이 農耕社會를 이루어 왔던 우리나라에서는, 定着하여 살고 있는 땅, 그 自體가 生存의 手段일 뿐만 아니라, 한 祖上의 子孫이라는 單一民族意識이, 國家와 家門과 내 家庭이 하나라는 君父一體思想으로 發展하여 外部의 威脅에 너와 내가 한덩어리가 되어 내나라와 내고장을 지키는 이른바 總力戰 概念의 現代的인 國家防衛 意識을 일찍부터 定着시켜 왔으니, 平時에는各自生業에 從事하다가一旦 有事時에는 國防의 義務를遂行하는 이른바 兵農一致의 軍事制度를 發展시켜 왔다.

이는 바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며 일하는” 오늘의 鄉土豫備軍 制度와 같은 것으로, 이러한 우리 歷史속에 이어온 民兵中心의 防衛制度를 再吟味하여 봄으로써 地域單位共同防衛體制의 發展方向을 提示하는데 先祖의 智慧를 빌리고자 한다

### 2. 三國時代

#### 가. 新羅의 花郎制度

花郎徒는 新羅 때 青少年들로 하여금 평소 心身을 鍛鍊하고 修養을 쌓아 社會生活의 規範을 가르쳐 必要時には 戰鬪員이 될 수 있는 社會의指導的 人物을 養成하는 민간단체로 출발하였으며 이들은 世俗五戒와 三綱을 指導理念으로 하여 壯烈한 氣魄과 씩씩한 氣像을涵養함으로써, 斯多含과 金庚信, 宣昌과 같이 훌륭한 人材를 輩出하였고, 이로 因하여 三國統一의 大業을 이룩할 수 있었음은 우리가 다 아는 事實이다.

#### 나. 高句麗의 扇堂

扇堂이란 文武一致 教育主義로 平民層의 子弟에게 經典과 弓術을 教習시키기 위하여 平壤遷都以後全國各處에 設置한 사학기관으로써 地方의平民子弟들을 平時에는 道義를 닦으며 武術을 鍛磨하다가一旦 有事時에는 地方軍에 補充되어 戰鬪에 臨하는 오늘의豫備軍의 性格을 具有한 組織이었다.

#### 3. 高麗時代

高麗의 병역제도는 原則적으로 世襲에 依하여 16歲부터 60歲까지의 男子를 軍人과 養戶로 나누어 兵役에 臨하도록 하는 軍戶制로서 軍人은 現役에 服務하고, 養戶는 軍人를 扶養하는 義務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軍事組織은 京軍(中央軍)인 2軍 6衛와 外軍(地方軍)으로 顛성하였는 바, 前者는 政治的 性格을 具有한 常備軍이었으나 後者는 國防軍의 性格을 具有한 豫備軍性格의 民兵으로서 이는 다시 주현군과 州鎮軍으로 구분되었고 以外에當時의 狀況에 따라 編成된 光軍과 別武班이 있었다.

#### 가. 州縣軍

州縣軍은 村落居住農民으로 構成되어 有事時外侵에 대한 防禦 및 地方의 治安維持와 勞動에動員되는 한편 中央統制下에 定期적으로 防戍와 労役에動員되는 任務를遂行하였다.

#### 나. 州鎮軍

高麗의 北方(兩界) 國境地帶는 이미 建國初期부터 國防을 爲한 軍隊 駐屯地인 鎮이 設置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鎮은 一種의 防禦都市로서, 하나의 獨立된 戰鬪單位部隊를 形成하여, 中央의直接적인 指揮統制下에 있었다.

鎮城내에 居住하는 者는 基幹部隊인 常備軍으로 編成되었으나, 平時에는 土地를 耕作케 하였고, 城外에 居住하는 者는 屯田과 같은 土地를耕作하다가 有事時에는 城내에 들어와 戰鬪에 參加하도록 하였으니, 이들은 모두 豫備軍 組織이라 할 수 있다.

#### 다. 光軍

光軍은 高麗 正宗 2年(947)에 契丹의 侵入에對備하여 앞에서 言及한 京軍과 外軍外에 別途로 軍事 30萬名을 徵集하여 編成한 軍事組織으로서

이는 恒常 戰鬪態勢를 갖추고 있는 常備軍의 性格이 아니라 必要하면 언제든지 動員될 수 있도록 計劃된 一種의 豫備軍과 같은 性格을 지닌 常設的組織이었다.

#### 라. 別武班

別武班은 윤관의 建議에 따라 女眞을 征伐하기 為하여 設置한 一種의 豫備軍部隊로, 말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자를 區分하여 騎兵과 步兵으로編成하였으며 騎兵은 神騎軍, 步兵은 神步軍이라 하였고 僧兵으로 이루어진 特別部隊는 降魔軍이라 하였다.

### 4. 李朝時代

李朝의 兵役制度는 建國初期부터 兩班階級을除外한 16歲以上 60歲까지의 平民에게 軍役의 義務를 賦課하고 6年마다 軍籍에 올리도록 하였다.

이들 軍役對象者는 番上制度에 依據 交代로 徵集되어 服務하였는데 이는 高麗時代의 軍戶制度에서 緣由된 것이었다.

李祖時代의 軍事組織은 壬辰倭亂과 丙子胡亂등을 通하여 많은 制度의 改善이 있었으나 本文에서는 民兵制度의 核心이라 할 수 있는 義兵과 僧軍組織 그리고 茶山 丁若鏞에 依하여 獨創의 으로 主唱된 民堡自衛體制에 對하여 重點的으로 다루고자 한다.

#### 가. 義兵

義兵이란 異民族의 侵入을 擊退하기 為하여 自己의 兵器를 쓰고 自己의 食糧을 먹으며 國家를 為하여 討賊하는(自用其兵, 自食其糧, 為國討賊) 自生的 民兵組織으로서 이들의 愛國, 愛族, 愛鄉의 自衛的 武力抗爭精神은 丙子胡亂이나 韓末의 義兵運動, 그리고 獨立運動으로 이어져, 오늘날에 있어서 鄉土豫備軍의 精神的 根據를 이루게 되었다.

#### 나. 僧兵

우리나라에 佛敎가 傳來된 以後 僧侶들이 많아짐에 따라 國家에서는 有事時에 이들을 組织화하여 出戰케 하였으니 僧侶들로 하여금 寺刹을 中心으로 山城을 構築케 하여 守備케 하였으며 이리한 寺刹을 僧營이라 하고 僧營에는 有事時에 對備한 食糧과 裝備등을 保管하기 為하여 僧庫를 設置하였으니, 이는 現在의 職場豫備軍 部隊와

類似한 性格의 組織이라고 볼 수 있다.

#### 다. 茶山 丁若鏞의 民堡制度

李朝 純祖 12年 茶山 丁若鏞先生은 獨創의 民堡自衛體制를 構想하고 이를 “民堡議”에 叙述하였다. 이는 全國民의 力量을 防衛力化하여 鄉土를 防衛한다는 試圖로서 오늘우리가 必要로 하는 地域單位共同防衛體制와 脈絡을 같이 하는 것으로 重要한 意義를 갖고 있다.

茶山은 正祖 16年 “閭田法”에서 30戶 内外를 1閭로 뮤어서 閭長을 두어 그 指揮監督下에 共同耕作하여 各者의 勞動量에 따라서 收穫物을 分配하고, 一旦 有事時에는 閭長이 軍事指揮權을 行使하여 自體防禦에 臨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나할과 比較할 수 있는 一種의 協同 農場制度를 主張하였으며, 純祖 11年(1811)에는 洪景來의 亂을 契機로, “民堡議”를 著述하였으니, 戰亂에 對備한 防衛體制는 于先民衆의 力量을 穩存하게 한 然後에 이를 戰力化하여야 하며 그러기 為하여는 民衆의 慾求에 副應할 수 있도록 土着的性向에 基盤을 둔 防衛體制를 構築하여야 하고, 그러므로 民堡를 鄉村單位로 設置하여 鄉村의 住民이 “各者守禦”하도록 하며, 이를 為하여는 民間의 武裝이 前提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民堡는 곧 民間이 防衛하는 山城이다. 이러한 民堡는 全國的으로 編成되어야 하기 때문에 陸地나 島嶼, 그리고 民間의 山寺를 莫論하고 모두 設置한다. 그리고 이러한 民堡는 鄉村單位로 編成하되 敵을 防衛하면서 生活을 營爲할 수 있도록 戰鬪 및 勞動組織을 編成維持하며 原則의 으로 8歲以上的 男女全員을 對象으로 編成함으로서 鄉村單位로 總力戰體制를 갖추도록 構想하고 있다.

## III. 外國의 防衛制度

### 1. 概要

各國의 防衛制度는 그나라의 歷史와 處해 있는 現實에 따라 相異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그나라의 特性을 바탕으로 制度를 發展시켜온 結果로서 本文에서는 主로 우리의 鄉土豫備軍 創設에 影響을 준 스위스의 民兵制度와 이스라엘의 市民軍制度, 그리고 우리나라와 類似하게 東西獨으로 分斷되

이 常備軍이 NATO統制下에 있는 西獨의 國土防衛軍에 對하여 다루고자 한다.

## 2. 스위스의 民兵制度

스위스는 地形上 周邊이 強大國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山岳國家로서 “빈” 會談에서 永世中立國이 되었으나, 自國의 獨立을 지키기 為하여 國民皆兵制度를 採擇하여 全國民이 한 名의例外도 없이 國防의 義務를 지는 民兵制度를 維持하고 있다. 따라서 스위스의 모든 男子는 20歲로부터 50歲까지 兵役義務를 지고, 將校는 55歲까지 義務를 지게되며, 身體條件이나 其他 條件如何를 莫論하고 모두 彻底하고 同等한 義務를 履行하는 것이 特徵이라 할 수 있다.

## 3. 이스라엘의 市民軍制度

이스라엘軍은 平時 最少의 常備軍을 維持하여, 早期警報 및 豫備軍이 動員되어 任務를 遂行하기 까지의 戰鬪準備時間은 獲得하는 任務를 遂行하고, 主力軍의 任務는 動員된 豫備軍이 遂行하는 것이 하나의 特徵이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모든 少年少女는 “가드나”라는 準軍事的 性格을 띤 團體에 所屬되어 軍事訓練을 받으며 18歲로부터 약 2~3年間 軍에 服務하게 되고 除隊後에는 24年間豫備軍으로, 그리고 45歲 以後에는 民防衛要員으로 編成된다.

## 4. 西獨의 國土防衛軍

西獨聯邦軍은 陸, 海, 空軍과 國土防衛軍으로 編成되어 있다. 이중 國土防衛軍은 實役을 畢한豫備役으로 주로 構成되어 이들은 理區隸下의 常設豫備部隊 또는 職場에서 年 30日間씩 訓練을 實施하고 있으며, NATO軍이 擔當하는 戰線後方地域의 防禦를 擔當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各 國家는 自國이 處한 環境과 實情에 맞도록 서로 相異한 防衛制度를 發展시키고 있으나 어느 나라든지 自國의 總力を 國家防衛에 集中시킬 수 있도록 民兵center의 總力戰體制를 維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우리의 安保環境

## 1. 概 要

休戰으로 破壊이 몇은지 36년이 지났으나 分斷의 悲劇은 終熄되지 않은채 美蘇를 主軸으로 한 列強勢力의 角逐場으로 化한 韓半島에는 南北의 對決이 갈수록 尖銳化되고 있을 뿐으로 이에 우리에게 直接的인 影響을 미칠 韓半島 周邊의 情勢와 北傀의 戰略企圖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 2. 周邊情勢

韓半島를 둘러싼 힘의 均衡은 美國과 日本, 中共 및 蘇聯의 相互關係에 依하여 流動的으로 變하여 왔으며, 이들 所謂 4強의 關係는 우리나라 安保와 相互密接한 關係에 놓여 있으며, 特히 中蘇의 力學關係는 우리에게 있어 매우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1960年代에 시작된 中·蘇의 理念紛爭은 1970年代初의 國境紛爭으로 이어져 1970年代 後半에는 마침내 兩國의 關係가 극도로 惡化되었다. 蘇聯에 對抗한 美·日·中共의 協力關係를 形成하기에 이르렀고, 1980年代에 와서는 한층 더 緊密한 關係로 發展되었다.

이러한 美·日·中共關係의 改善과 協力의 強化는 蘇聯에 크나큰 威脅으로서, 蘇聯은 東北亞에 있어서의 孤立을 脫皮하고 太平洋 地域에서의 戰略的 主導權을 掌握하기 為한 一連의 政策으로 極東地域에 大幅의 戰力を 增強시키고 있고 北傀에 最新武器를 供給하는 等 北傀와 密着되고 있어, 이러한 事態를 우리는 深刻하고 愛慮하지 않을 수 없다.

## 3. 北傀의 對南戰略

### 가. 統一戰略

北傀는 全韓半島를 共產化하여 統一하겠다는 基本目標를 樹立하고 그 實踐的 基調로서 “先南朝鮮革命, 後統一”이라는, 原則아래 所謂 三大革命力量強化라는 統一戰略을 採擇하고 이를 為하여 “4大軍事路線”을 推進하고 있는 바, 3大革命力量의 強化가 政治的인 戰略인데 比하여 4大軍事路線은 이를 뒷 반침하는 軍事的인 戰略이라

할 수 있다.

#### 나. 北傀의 軍事戰略

北傀의 軍事戰略은, 大量 先制 奇襲攻擊과 配合戰으로 前後方을 同時戰場化하여 速戰速決하는 短期速決戰略으로서 韓國의 戰鬪準備를 完了하기 以前에, 그리고 美國의 增援軍이 到達하기 以前에 前後方을 同時打擊하여 全 國土를 同時に 戰場化하고 大量先制 奇襲攻擊과 空中優勢權의 確保로 主導權을 掌握하여 現 戰線을 奇襲의 으로突破하고 이를 利用, 機械化部隊를 投入, 迅速한 戰果擴大로 全國土를 席卷하여 野戰主力을 撃滅한다는 것이다.

## V. 地域單位 共同防衛 現實

### 1. 地域單位 共同防衛의 必要性

그러면 왜 地域單位 共同防衛 體制의 構成이 必要한가?

北傀의 對南軍事戰略을 基礎로 할 때, 萬一 第2의 6. 25事變이勃發한다면 다음과 같이 展開되리라고豫想해 볼 수 있다.

즉, 北傀는 優勢한 戰鬪力を 集中하여 先制奇襲攻擊을 敢行하므로서 戰爭初期에 制空權과 制海權을 確保하는 同時に, 地上軍은 我軍이 動員되어 戰鬪力を 增強하기 以前에 最大限으로迅速하게 現戰線을突破하며, 海上과 空中으로浸透한 敵非正規戰部隊는 戰爭指揮 및 繼續을 為한 우리의 重要機關과 交通通信 및 產業施設을破壞하여, 組織의인 戰爭遂行 및 動員을妨害하는 한편 空軍과 非正規戰部隊의 無差別 爆擊과破壞 그리고 住民들의 大量殺傷으로 社會混亂을造成하여 國民의 戰意를喪失케 하고자 할 것으로 判斷된다. 따라서 이에 對應하기 為하여는 敵의 前後方同時戰場化를拒否하여야 하며 이는 바로 後方地城의 安定을 確保하여야 하는데 있는 것으로, 따라서 確固한 地域單位 共同防衛 體制의 構築이야말로 이러한 目的을達成할 수 있는 最善의 方法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北傀에게 前後方同時戰場化가 不可能하여 勝利할 수 없다는認識을 強烈하게 심어줌으로써 戰爭企圖 自體를拋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戰爭抑制力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스위스의 防衛體制와 히틀러의

스위스 侵攻拋棄는 이를 立證하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 바로 地域單位 共同防衛 體制의 切實한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 2. 地域單位 共同防衛의 實態

그러나 이러한 地域單位 共同防衛의 重要性에도 不拘하고 오늘의 現實態는 그렇게 滿足한 水準이라고 볼 수 없다.

地域單位 共同防衛는 前章에서 言及했듯이 平時에는 各者의 生業에 從事하다가, 有事時에는 地域防衛를 為하여 地域構成員 모두가 自發의 으로 參與하여 모든 機能과 努力を 統合하고 集中함으로써 自己地域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祖上傳來로 내려오는 “無事則為農, 有事則為軍”의 兵農一致制度에 立脚한 民兵思想과 根本的으로 同一한 것이다.

따라서 地域單位 共同防衛를 為하여는 地域內 모든 可用要素, 即 民, 軍, 警, 豫備軍, 民防衛隊等諸防衛要素의 統合運用이 制度의 으로 保障되어야 하며, 이들의 모든 努力を 統合 集中할 수 있도록 組織되어야 하고, 이의 活用을 為한 計劃과 訓練이合理的으로 平素부터 準備되고 施行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實情은 이를 諸防衛要素를 統合의 으로 組織하고 活用할 수 있는 制度의 裝置가 未洽하다.

가. 防衛關聯法이 兵役法, 鄉土豫備軍 設置法, 民防衛基本法, 非常對備資源管理法으로 多元化되어 있어, 諸防衛要素를 統合運用 할 수 있는 法의 根據가 缺如되어 있다.

#### 나. 地域防衛體制의 多元化

防衛關聯法의 多元化는 必然的으로 各 關聯法에 立脚한 別途의 協議機構를 設置함으로써 防衛體制의 多元化를 招來하고 있어, 戰平時業務의 連繫性이 缺如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各 協議會의 構成人員도 거의同一人員으로 編成되어, 그 運用의 實效性이 疑問視되고 있다.

#### 다. 防衛活動 遂行을 為한 支援施設의 多元化

各 防衛 關聯法에 根據한 各種 協議機構는 防衛機能을 遂行하기 為한 支援施設로 各其의 狀況室을 별도로 設置運營함으로서 戰平時의 業務連繫性은勿論 地域防衛를 為한 作戰活動과 作戰支援

活動의 統合이 未洽한 實情이다.

以上과 같이 우리 地域單位 共同防衛 體制는 地域의 諸防衛要素를 統合하여 防衛戰力化 할 수 있는 法的 根據가 缺如되었을 뿐만아니라, 地域 防衛體制의 一環으로 設置된 防衛協議機構 및 支援施設의 多元화로 共同防衛 體制의 構築이 未洽하며 따라서 地域防衛를 為한 計劃樹立과 訓練體系도 서로 相異하여, 防衛力量의 集中이 어려운 實情이다.

### 3. 地方自治制度와 地域單位 共同防衛

地域單位 共同防衛는 그 性格으로 보아 民間主導의 防衛體制라는 屬性을 갖는다. 또한 鄉土防衛를 為한 後方地域의 作戰은 地域住民 속에서 遂行되므로 住民의 全幅의in 支持와 自發的인 協助敘이는 成功의in 作戰遂行이 不可能하다.

그러나, 現行 地域單位 共同防衛體制下의 住民參與는 中央政府의 統制아래 官主導로 施行되고 있음을 否認할 수는 없다.

이제 多幸히 '87年度에는 地方自治制度가 施行될 豫定으로 있어 地域住民에 依하여 構成된 地方自治團體가 主導가 되어 地域單位 共同防衛를 위한 諸般活動을 能動的으로遂行한다면, 文字 그대로 내고장을 내손으로 지키는 生業活動과 防衛活動이 一致된 生活單位別 防衛組織體制인 地域單位共同防衛體制를 構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VI. 地域單位 共同防衛 體制의 發展方向

### 1. 概要

地域單位 共同防衛가 成功의으로 遂行되기 為한 先決要件은, 地域住民의 自發的인 參與와 全體構成人員의 統合된 努力이 必要함은 이미 前述한 바와 같다. 이 中, 地域住民의 自發的인 參與는 地方自治制度의 實施로 解消可能하므로, 여기에서는 地域의 諸防衛可用要素를 어떻게 統合运用할 수 있을 것인가를 重點的으로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 2. 共同防衛體制의 法的 保障

地域單位 共同防衛體制를 效率的으로 構築하기

爲하여는 現行 各種防衛關聯法에 根據한 諸防衛要素를 統合하여 運用할 수 있는 法的根據 마련이 必要하다. 이를 為하여 새로운 法律을 制定할 수도 있겠으나 鄉土豫備軍 設置法이 鄉土防衛를 為하여 制定된 法律이므로 이의 部分的인 補完으로 可能하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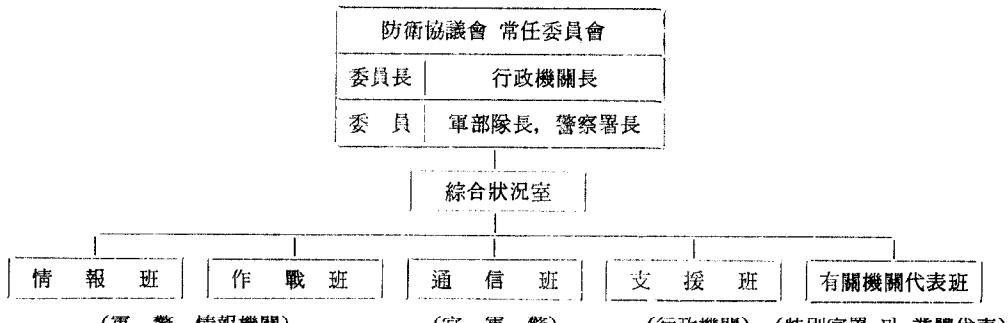
即 鄉土豫備軍 設置法은 第1條 目的에 “이 法은 鄉土防衛를 하기 為하여 鄉土豫備軍의 設置, 組織, 編成과 動員等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함으로써 單純히 鄉土豫備軍의 設置, 組織, 編成과 動員만을 規定했을 뿐 鄉土豫備軍을 어떻게 運用할 것이며, 算備軍의 作戰에 必要로 하는 支援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規定하지 않았고, 더구기 鄉土防衛(쉽게는 地域單位共同防衛)는豫備軍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이므로 本來鄉土防衛를 目的으로 制定된 立法趣旨를 充分히 反映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제 鄉土豫備軍 設置法이 制定된지 20년이 지났다. 最初 이 法이 制定된 當時は 戰時動員에 依한 前方防禦戰力의 補強과 平時 對非正規戰遂行을 為한豫備軍保有의 必要性에 置重했으나 이제는 前後方 同時戰場化에 對應한 後方防衛의 主力軍으로서 純對의in 것인만큼, 比際에 鄉土豫備軍 設置法을 鄉土防衛 目的이라는 立法趣旨에 適合하도록 改正 補完하여야 한다.

그러나 鄉土豫備軍 設置法이라는 法의 名稱 자체가豫備軍의 設置를 為한 法임을 意味하고 있어 이 法이 鄉土防衛를 為한 諸概念을 規定하기에는多少 無理가 있으므로 鄉土豫備軍 設置法을 鄉土防衛法이라 改稱하고, 이 法에 各種 防衛關聯法에 根據한 諸防衛要素 및 各種協議機構과 支援施設을 統合運用할 수 있도록 一部 條項을 插入補完한다면 지금까지 導出되었던 未備點을 完全하게 解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3. 共同防衛의 組織體系

地域單位 共同防衛를 為한 組織體系로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議長이 되고, 共同防衛에 關聯된 모든 組織과 要素를 網羅한 防衛協議會를 構成하여야 하며 이러한 防衛協議會는 前項에서 言及한 各種 協議機構의 機能을 統合하여遂行함으로써 地域의 共同防衛를 為한 모든 機能과 力量

〈表 VII-2〉 防衛協議會 常任委員會 및 狀況室 編成



을 統合할 수 있으며 現在 大統領訓令 第28號에 依하여 對非正規戰支援을 為한 防衛協議會가 編成運用되고 있으므로, 이를 鄉土防衛法에 反映한다면 새로운 組織을 設置할 必要는 없다.

그리고 防衛協議會의 審議 및 議決事項을 執行하기 為하여 防衛協議會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議長이 되고 地域軍部隊長과 警察署長이 委員이 되는 防衛協議會의 常任委員會를 構成하며, 常任委員會隸下에 官軍警合同의 綜合狀況室을 設置運營하여 戰平時의 모든 作戰 및 支援事項과 治安, 戰時行政, 動員業務等에 關한 事項을 綜合 把握하고, 常任委員會의 指示를 받아 이를 調整統制 및 處理함으로써 地域防衛를 為한 諸防衛要素의 指揮統制와 支援等을 統合, 共同努力을 地域防衛에 集中하는 地域單位 共同防衛組織을 構築하여, 體制를 整備하여야 한다.

#### 4. 共同防衛 計劃 및 訓練體系

現行 地域單位 共同防衛의 計劃樹立體系는 別途의 統一된 獨自의인 計劃體系가 없으며, 各 組織의 計劃體系에 따라 大統領訓令 28號 혹은 43號에 根據하여 作成되고 있어, 防衛努力의 效率의in 統合이 未治하다. 따라서 改正되는 鄉土防衛法에 根據하여 이를 施行하기 위한 鄉土防衛指針을 作成하고, 이 指針에 根據하여 軍, 警, 豫備軍의 鄉土防衛를 為한 作戰計劃과 行政官署 및 其他 機關의 鄉土防衛支援計劃을 作成함으로써 作戰과 支援努力의 統合이 可能하며, 計劃의 施行을 保障하기 為하여 週期의으로 地方自治團體의 長(職場長)의 主管下에 訓練을 實施함이 效果의이다. 現在는 訓練主管部署가 各期 相異하여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該當所管事項에 關한 訓練만 實施함으로써 訓練이 實際의이지 못하고 斷片의이며 訓練回數가 增加하여 負擔을 주고 있다 따라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年間事業으로 訓練計劃을 發展시키고 이에 따라 軍, 警, 豫備軍의 軍事事項과 行政官署 및 民防衛隊等의 支援事項에 關한 訓練이 統合의으로 計劃되고 實施됨으로써 戰爭勃發時 實際狀況에 對處할 수 있는 效果의인 訓練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訓練負擔을 減少하고 總力戰概念에 立脚한 地域單位 共同防衛意志를 高揚할 수 있을 것이다.

#### 5. 準備態勢 評價

準備態勢 評價는 作戰을 為한 訓練態勢 評價 및 支援을 為한 資源動員態勢 評價로 區分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 責任下에, 訓練態勢 評價는 地域單位 共同防衛訓練時 軍 또는 警察이 施行하고, 資源動員 態勢 評價는 分期 1回 行政官署에서 實施하며, 防衛協議會에서 이를 綜合分析 및 評價할 수 있도록 制度의으로 發展시킴으로써, 計劃에 依한 週期의인 地域單位 共同防衛의 準備態勢評價를 通하여 持續的으로 이를 補完 發展시켜야 한다.

### VII. 結論

地域單位 共同防衛는 전히 生疏한 新로운 制度가 아니라 우리 祖上 代代로 내려온 固有의 制度로서, 兵農一致에 依한 民兵中心의 防衛體制와 同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思想을 現代의 軍事의 制度와 安保現實에 適合하도록 體系의으

로 再定立하고 適用하려는 努力を 우리는 계율리 해왔다. 이제 되돌아보면 지난 半世紀에 걸쳐 우리는 國民의 피땀어린 努力으로 過去의 落後를 脫皮하고 先進國의 門턱에 발돋움하고 있으나 分斷祖國의 現實은 解消될 展望을 보이지 않고 있다. 6. 25를 일으켜 祖國을 未曾有의 慘狀으로 몰아넣었던 北傀의 金日成은 그 罪과를 反省하기보다는 오히려 每年 GNP의 24%를 國防費에 投入하여 軍事力 增強에 狂奔血眼이 되고 있어, 한시도 戰爭의 威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實情으로서, 萬一 韓半島에서 第2의 6. 25가 發生한다면, 우리가 勝者이진 또는 敗者이건 間에 지난 半世紀의 努力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歷史는 數

十年을 退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悲劇을 防止하고 平和的으로 統一을 이룰수 있기 為하여는 우리 스스로 北傀를 壓倒할 수 있는 充分한 힘을 기르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自由로운 祖國建設과 北傀를 壓倒할 수 있는 힘을 아울러 갖는 方法은 完璧한 地域單位共同防衛體制를 갖추는 것이 捷徑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鄉土豫備軍 設置法을 鄉土防衛法으로 改正 補完함으로써 民, 官, 軍, 警, 豫備軍, 民防衛隊 等 모든 要素를 防衛力化하고 地方自治團體의 長 主導아래 이를 統合運用하여 現代戰에 副應할 수 있는 國家總力戰 概念의 地域單位 共同防衛體制를 時急히 構築하여야 한다.